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9. 12. 2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2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68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1999년 12월 21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법률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규정 및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제21조제1항제4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신설조항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관리 소홀로 청결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한 조치를 조례 제5조 제5항에 규정하여 관리도록 하는 안이며,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를 삭제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였던 바 동법이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의 제2항 중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했던 내용이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9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는 개정안이며,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삭제는 봉투 판매인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모조봉투 유통 발견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게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안으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1

제출년월일 : 1999. 11. 2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99. 2. 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99. 8. 9.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토지 · 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법률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 관리규정 및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규정을 삭제 함(안 제9조, 안 제21조제1항제4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라.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법 제 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청장이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토지 · 건물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토지 ·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 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1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제21조제1항제4호(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⑤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1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제6조~제8조(생략)	<p>(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p> <p>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②5층 이상의 아파트 및 동당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⑤구청장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p> <p>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u>제7조 내지 제9조</u>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u>제7조 내지 제8조</u>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p>
제11조~제20조(생 략)	<p>(현행과 같음)</p>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현행과 같음)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현행과 같음)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현행과 같음)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삭 제)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현행과 같음)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현행과 같음)
7. 기타 행정지시사항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12. 2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68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 (1999년 12월 2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 10. 16.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직제를 개정된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으로 함(안 제6조제2항)
-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으로 함(안 제7조제2항)